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633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혁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23. 접수 제71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의 채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4.경 대구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대구 수성구 E 외 222 필지 소재 F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약금 등 109,68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1차3801호 사건에서 2011. 4. 29. 위약금 등 109,68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1. 5. 24.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채권양수

D는 2014년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관재인 G은 2020. 6. 2.경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6. 9.경 원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한 D의 판결금 채권 47억 원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C에게 2020. 6. 12.경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피고와 C는 2007. 12. 12. 별지 목록 기재 H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2) C는 2020. 6.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23. 접수 제71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황 등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있었는데 위 지분의 가액은 128,250,000원 내지 150,500,000원 정도로 추정되고(2020년 2분기 기준), 소극재산으로는 D에 대한 원리금 369,412,034원(원금 109,688,14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9,723,887원) 상당의 채무, J에 대한 52,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2) 피고와 C는 1991. 11.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확정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20드단589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화지원과,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1. 5. 24.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5. 25.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8. 25.경 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8. 25. 이 법원 2020타채18162 사건에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L,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M, 청구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금 109,688,147원 및 지연손해금 207,524,313원 등으로 하여 C의 주식회사 L,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20. 8. 25. 무렵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7. 11. 2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 중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피고는 2019. 6.경 C의 방만한 생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C가 2020. 6. 22.경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1991. 11. 12.경부터 약 16년간량이 경과한 2007. 12. 12.경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C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는 2008. 10. 21.경 피고 모르게 친구인 J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00만 원)하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 왔다.

(2) C는 2019. 6.경 피고에게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줄 테니 J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J에게 1년 내에 직접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J은 피고를 믿고 2019. 7. 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3) 그런데 C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미루어 오다가 2020. 6. 22.경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가 2020. 6. 12.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2020. 6. 12.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10일이 지난 2020. 6. 22.경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와 C는 법률상 부부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였던 점, ③ 피고는 C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성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20층,

지하1층아파트

지층 대피실 595.4556㎡

1층 아파트 619.92㎡

2층 아파트 601.6056㎡

3층 아파트 601.6056㎡

4층 아파트 601.6056㎡

5층 아파트 601.6056㎡

6층 아파트 601.6056㎡

7층 아파트 601.6056㎡

8층 아파트 601.6056㎡

9층 아파트 601.6056㎡

10층 아파트 601.6056㎡

11층 아파트 601.6056㎡

12층 아파트 601.6056㎡

13층 아파트 601.6056㎡

14층 아파트 601.6056㎡

15층 아파트 601.6056㎡

16층 아파트 601.6056㎡

17층 아파트 601.6056㎡

18층 아파트 601.6056㎡

19층 아파트 601.6056㎡

20층 아파트 601.60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9층 호

84.9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77003.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77,003.4분의 38.0587

중 순위번호 6번 지분 2분의 1()

